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안)

제정 [건교부 교안 91180-44, 2004. 1. 30]

개정 [건교부 교통안전팀-1795, 2004.11. 2]

개정 [건교부 교통안전팀-1787, 2006. 8.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조의 2·제26조·제34조·제37조제3항·제40조제3항·제41조·제43조,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의2·제16조·제23조제4항및제5항·제25조·제26조제4항·제6항내지제7항·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보험사업자등·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및 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의되거나 약칭된 바와 같다.

제2장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제3조(가입관리전산망 적용대상 업무)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보험사업자등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보장사업자”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지사의 업무(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허가·검사 또는 신고수리시 의무보험의 가입확인

나. 이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목의 확인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자료(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자료를 말한다. 이하 “등록자료”라 한다)의 송부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

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 가입명령

나.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통고처분

다. 법 제4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3. 보험사업자등의 업무

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 가입계약 미갱신자의 확인

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가목의 확인 결과의 통지

다.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에 필요한 의무보험 계약자료의 통보

4. 보장사업자의 업무

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확인

나.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의 통지

다. 영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상금 지급내역의 통지

제4조(가입관리전산망의 관리) ①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은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개발원”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관리한다.

②보험개발원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③보험개발원은 가입관리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보험사업자등·보장사업자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는 등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책임있는 관계기관·보험사업자등·보장사업자 및 관계인은 보험개발원의 요구사항은 물론 기타 전산망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여야 한다.

④보험개발원·관계기관 및 보험사업자등은 가입관리전산망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과 보험개발원간의 관계는 법령 및 이 지침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등록자료의 송부) ①시·도지사는 등록자료가 전산입력후 2일이내에 자동차

관리전산망에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으로 송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부시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 또는 말소등록 : 자동차등록번호(건설기계인 자동차는 건설기계등록번호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인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를, 이륜차는 이륜자동차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차대번호·등록(신고)일자·이름·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하며, SOFA 사유차량인 경우에는 군번 또는 사회보장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주소지(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주소지와 다를 때에는 그 사용본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우편번호·행정구역코드 등
2. 이전 또는 변경등록자료 : 제1호의 항목과 변동된 항목의 변동전·후 내역에 관한 사항

③보험개발원은 등록자료의 관리·보관·사용 및 제공과 관련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등록자료보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자료의 송부) ①보험사업자등(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의무보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해 계약을 주관한 보험사업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의무보험의 계약자료(이하 “계약자료”라 한다)를 의무보험의 계약사실 전산입력후 2일 이내에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SOFA 사유차량만을 대상으로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외국보험사업자로서 가입관리전산망의 직접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송부방법 및 송부주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송부시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계약자료의 정확성 확보) ①보험사업자등은 의무보험의 가입계약 또는 그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업무상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1. 자동차에 관한 사항 : 당해 계약의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
2. 보험가입자에 관한 사항 : 보험가입자(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명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지 등

②보험사업자등은 보험개발원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등록자료를 통하여 계약자료의 정확성제고를 목적으로 별표 2의 양식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제1항의 보험가입자 및 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정정처리 내용을 보험개발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험사업자등은 보험가입계약의 청약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누락 또는 착오가 있을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추후 의무보험의 종료안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이하 “미가입자”라 한다)로 분류되어 의무보험의 가입명령·과태료·범칙금처분 또는 고발 등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보험사업자등은 의무보험 계약이 신규등록 이전에 차대번호 또는 임시운행허가 번호로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 보험계약관련자료의 확인을 통하여 당해 계약 체결 1월이내에 자동차등록번호로 계약자료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보험계약이 1월미만 단기계약일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사실 통지가 도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갱신계약 지연 등의 경우 과태료·범칙금처분 또는 고발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됨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의무보험의 가입확인 등

제8조(의무보험에의 가입여부 확인) ①관할관청은 법제34조제1항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사용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가 신청 당시 유효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등록·허가·검사의 처분이나 사용신고의 수리를 행할 수 있으며, 그 가입사실 확인내용을 신청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규칙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으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받아 의무보험 가입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반환하고 그 서류의 사본은 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에 있어 신규등록 또는 사용신고의 수리의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즉시 해당 보험사업자등에 송부 또는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번호가 해당 보험사업자등에게 통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추후 미가입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계약자료의 제공)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업자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

한 계약자료를 이용하여 관할관청이 제8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추출 및 통지

제10조(보험개발원의 미가입자동차 추출) 보험개발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 받은 계약자료를 자동차등록자료와 연계 검색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여부를 확인·조정하여 최종 미가입자동차자료를 추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개발원의 최종미가입자료 송부) ①보험개발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출된 의무보험의 미가입자동차자료(이하 “최종미가입자료”라 한다)를 지체없이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부 당시 갱신계약이 이루어진 자료(이하 “위반기간확정자료”라 한다. 이하 같다)와 갱신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료(이하 “위반기간미확정자료”라 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보험개발원은 이해관계인의 문의에 대한 응대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사업자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한 최종미가입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개발원의 위반기간미확정자료 확인 및 송부) ①보험개발원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최종미가입자료중 위반기간미확정자료에 대하여는 송부일 이후 최종미가입자료 추출시마다 계약자료를 통하여 갱신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갱신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는 추후 송부하는 위반기간확정자료에 위반기간미확정자료로 기 통보된 사항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기간미확정자료에 대한 갱신계약 여부의 확인행위는 그 위반기간이 영 별표 5에 정한 해당 차종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에 도달하는 때까지 행하고, 그 최고한도액에 도달한 건(이하 “과태료최고한도액부과대상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험개발원은 제1항의 위반기간미확정자료중 계약자료를 통하여 6월 이상의 기간동안 갱신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이하 “장기미가입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별도 추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에 대한 처리는 1회에 한한다.

제5장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조치등

제13조(처리유형의 확인) ①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송부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등록사항과 의무보험의 가입내역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여 별표 3의 유형별 처리요령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 및 의무보험 가입명령대상으로 구분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대상 및 의무보험 가입명령대상의 구분처리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대상자료를 수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체없이 처리한다.

제14조(과태료부과대상의 처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으로 구분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법 제41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업무를 행한다.

제15조(과태료 부과방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 및 제17조 규정의 과태료 처분업무를 행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위반기간이 동일한 경우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다. <신설>

제16조(의무보험 가입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명령대상으로 구분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의무보험의 가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보유자에게 제출받은 서류를 돌려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17조(가입명령건의 처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명령이 이루어진 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가입관리전산망 또는 가입사실증명서 등을 통하여 가입사실이

확인되어 위반기간이 확정된 때에 이를 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기간미확정자료의 갱신사실을 송부받은 경우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최고한도액부과대상건으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건에 대한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 처리내용을 확인하여 기 과태료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통고처분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장기미가입자동차에 대하여는 운행이 확인되는 자동차의 보유자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 제38조제2항,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장기미가입자동차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확인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자료의 오류확인 및 시정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최종미가입자료중 등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등록자료(자동차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대장의 기재내용)에 변동 또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자료에 오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등록관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등록관청은 그 오류내용을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업무처리

제20조(보험가입자등이 아닌자의 확인등) ①보장사업자는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자동차의 운행 당시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험개발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이 송부한 계약자료를 이용하여 보장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의무보험 계약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보장사업자의 청구 및 보상금 지급사실 송부) ①보장사업자는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사실을 즉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보장사업자는 시행령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내역을 즉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송부시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중복청구등의 확인) ①보장사업자는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사실의 중복여부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고, 청구서가 중복접수된 사실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서를 접수처리 하여야 한다.

②보장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하고 시행령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시행함에 있어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보상금 지급사실이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여 중복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험개발원은 보장사업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청구 및 지급사실을 이용하여 보장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청구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21조제3항의 항목을 포함하여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3조(업무계획 승인요청 및 관리등) ①보험개발원이 영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 및 소요경비의 내역서를 매년 1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 승인을 얻은 업무계획 또는 소요경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인을 요하는 기간 15일 전까지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개발원은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소요경비를 근거로 분담금사업자에게 매분기별로 분기별교부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보험개발원은 영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의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내역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년도의 계획 또는 예산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조표 및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보험개발원은 가입관리전산망에 관한 업무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 정리하여야 하며, 운영비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보험개발원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회계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보험개발원의 자료작성방법등 유지관리) ①보험개발원은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표준화를 위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제9조 내지 제12조·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송부자료에 관한 전산코드, 전산자료 작성 및 전송방법 등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할관청, 보험사업자등 및 보장사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보험개발원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할관청에 대한 통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의 확인) ①시·도지사, 보험사업자등 및 보장사업자는 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자료를 즉시 정정하고 이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보험개발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할관청은 자료의 오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및 보험사업자등에게 당해 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 및 보험사업자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전산처리 불능시의 자료의 작성·송부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용이 장기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보험사업자등, 보장사업자 및 기타 관계인이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중 관련자료의 작성·송부 및 처리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해당 곤란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자료의 목적외 사용 등의 금지) 이 지침에서 정한 자동차의무보험의 가입관리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할관청, 보험사업자등, 보장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직원·종사자 등은 미가입자동차자료, 계약자료 및 등록자료를 당해 업무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외부에 반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신규 보험사업자등의 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신규로 자동차의무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자등은 사업개시 이전에 이 지침에 의한 의무보험

가입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추출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 제5조제2항 시행후 2년6월 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보험사업자등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종전의 의무보험 계약의 종료 이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미가입자동차”라 한다)의 현황을 별표 5에서 정하는 항목 및 주기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보험개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미가입자동차 자료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한 계약자료와 서로 대조한 다음 이를 등록자료와 연계 검색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여부를 확인·조정하여 최종 미가입자동차 자료를 보험사업자등으로부터 최종 송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출하여야 한다.

③보험개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출된 미가입자동차 자료중 등록자료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검색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는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 등록번호등의 정확성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등은 이를 즉시 재확인하여 차기 미가입자동차 자료로 보험개발원에 정정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세부처리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제3조(업무계획 승인요청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①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의 회계기간은 2005년 1월 24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의 업무계획 및 소요경비는 2004년 11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도의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내역은 2005년 3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보험사업자등의 의무보험 미갱신자 확인 및 통지의무 이행) 보험개발원이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미가입자료를 추출·송부하는 경우 보험사업자등의 제3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 업무의 이행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료의 기한내 송부로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신설 2006. 8. 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무보험 계약자료의 송부 항목 (제6조관련)

1. 계약체결시

보험증권번호·주민등록번호·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보험가입자·용도·차종·보험유효기간·보험가입금액·통보년월일 등

2. 변경발생시

제1호와 동일한 항목으로 변경후의 내역(다만,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보험유효기간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로부터 동 법에서 정하는 승계기간을 더하여 작성)

[별표 2] 계약자료의 정확성 확인방법 (제7조관련)

1.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

- ① 처리방법 : 보험사업자등이 보험개발원에 대상건 조회요청(수시)
- ② 조회항목 :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등록소유자코드
- ③ 제공항목 : 해당 조회항목의 유무

2. 등록자료상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 미확인건 추출을 통한 처리

- ① 처리방법 : 보험개발원이 보험사업자등에게 대상건 추출 송부(수시)
- ② 제공항목 :
 - 계약자료의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이하 이항에서는 동일)를 등록자료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여 등록자료상 일치된 차량이 1대인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송부
 - 계약자료와 등록자료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분하여 송부

[별표 3] 유형별 처리요령 (제13조관련)

1. 과태료부과대상 및 가입명령대상 여부의 결정 및 처리

- ①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중 위반기간확정건은 과태료부과대상으로 처리
 - ②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중 위반기간미확정건은 보험개발원의 처리기간동안의 등록사항 변경과 의무보험의 가입내역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과태료부과대상 및 가입명령대상 여부 결정
- 가. 의무보험의 만료일 이후 의무보험의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건은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나. 의무보험의 만료일 이후 의무보험의 가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건에 대하여는 의무보험 가입명령 및 가입사실증명서 제출요구

2. 보험개발원 통보자료의 변동내역 확인시 처리

보험개발원의 통보이후에 보험계약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이 확인된 경우등 변동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동 내용을 반영하여 처리하고 그 근거를 보관

①의무보험의 만료일이후에 말소등록되어 미가입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만료일 이후 미가입기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②자동차의 양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전등록일(실제 양도일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을 기준으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의 의무보험 승계기간을 감안하고 양수인의 의무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처분

가. 의무보험 승계기간이후 양수인의 의무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된 건은 의무보험 승계기간후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과태료 처분

나. 의무보험 승계기간이후 양수인의 의무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건은 양수인에 대하여 의무보험의 가입명령 및 가입사실증명서 제출 요구

③자동차매매상이 소유하거나 알선을 위하여 제시신고 받아 관리하는 자동차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분

가. 자동차매매상이 매입하여 상품용자동차로 등록을 완료하고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다만, 상기 적용은 자동차의 검사, 시험 운행 등 자동차의 운행시는 해당되지 않음

나. 자동차매매상이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자동차를 관리하는 동안에 의무보험 미가입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알선대상차량의 소유자와 당해 매매사업자에게 단일건으로 과태료를 처분

3. 자동차보유자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자동차의 처리 관할관청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당해 자동차보유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4. 소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경우의 의무보험 가입사실의 인정

보험가입사실 확인에 있어 자동차의 소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도 가입사실을 인정

5. 의무보험 계약의 해지후 부활건의 처리

의무보험 계약의 부활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보험계약의 해지이후 부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6. 의무보험 계약기간 중도에 피보험자동차가 변경(차량대체)된 건의 처리

가. 변경전(대체전) 자동차의 변경일(대체일) 이후 양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기 제2호제2항의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분

나. 변경전(대체전) 자동차의 변경일(대체일) 이후 말소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보험 변경일(대체일) 이후 말소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과태료 처분

다. 변경전(대체전) 자동차의 변경일(대체일) 이후 양도 또는 말소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의무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건에 대하여는 제1호제2항나목의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분

7. 공휴일기간중 의무보험 미가입건의 과태료 처분

공휴일기간중 발생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도 과태료부과 처분

8. 영 별표5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 방법

과태료부과금액은 해당건별 위반행위의 발생시점 과태료부과기준을 적용

[별표 4] 보장사업자의 송부대상 항목 (제21조관련)

1. 청구사실의 송부대상 항목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단,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고발생의 일시 및 장소, 가해자동차의 종류 및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단,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청구금액 등

2. 보상금 지급사실의 송부대상항목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고발생의 일시 및 장소, 가해자동차의

종류 및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보상금액·부상급항·장해급항·지급일자 등

[별표 5] 보험사업자등의 미가입자동차 자료의 송부(부칙 제2조제1항 관련)

1. 미가입자동차 현황에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

① 보험가입자동차 및 보험가입자에 관한 사항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용도·차종·보험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지 및 우편번호

②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신·구 계약의 보험사업자등·보험유효기간 및 미가입기간 등(다만,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보험유효기간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로부터 동 법에서 정하는 승계기간을 감안하여 작성)

2. 미가입자동차 현황 송부 주기

① 매월 1일~10일까지 기간동안에 의무보험 유효기간이 종료된 자동차 : 당월 15일까지의 갱신계약체결 여부를 표시하여 당월 20일까지 송부

② 매월 11일~20일까지 기간동안에 의무보험 유효기간이 종료된 자동차 : 당월 25일까지의 갱신계약체결 여부를 표시하여 당월 말일까지 송부

③ 매월 21일~말일까지 기간동안에 의무보험 유효기간이 종료된 자동차 : 다음달 5일까지의 갱신계약 체결여부를 표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송부

[별표 6] 의무보험등의 미가입자동차 추출방법 (부칙 제2조제4항 관련)

1. 다른 보험사업자등과의 갱신계약 체결여부의 확인
 - ① 보험사업자등이 송부한 미가입자동차 자료를 중심으로 계약자료 검색(검색항목 :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 ② 제1호의 검색결과 미가입기간이 발생하지 않고 갱신 계약자료가 확인되는 건은 삭제
 - ③ 제1호의 검색결과 갱신 계약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건과 갱신계약자료가 확인되었으나 미가입기간이 발생한 건을 추출

2. 등록사항 변경여부의 확인
 - ①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추출된 건에 대한 등록자료 검색(검색항목 :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 ② 제1호의 검색결과 등록자료 변동에 의해 미가입기간이 발생하지 않고 말소등록이 확인된 건은 삭제
 - ③ 제1호의 검색결과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그 내용으로 자료 수정
 - ④ 제3호의 자료에 대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계약자료를 재검색하여 갱신 계약자료가 검색되지 않은 건과 갱신 계약자료가 확인되었으나 미가입기간이 발생한 건을 추출

3. 등록자료 검색불가능건의 추출 및 확인요청
 - ① 제1항제3호중 제2항제1호의 등록자료 검색이 불가능한 건 추출(검색조건 :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 ② 동 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등에 확인요청건으로 분류 및 확인요청통보(동일건의 확인요청은 1회에 한함)

4. 보험사업자등의 재확인자료 회신

제3항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보험사업자등은 차량번호등의 정확성여부를 즉시 재확인하여 차기 미가입자동차 자료로 보험개발원에 정정 송부

5. 최종미가입자동차의 추출 및 송부

제2항제4호에 의한 등록자료 확인으로 보험사업자등에 확인요청이 불필요한 자료와 제4항의 자료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업무처리절차를 다시 거쳐 추출된 미가입자동차 자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송부

※ 업무처리 흐름도



